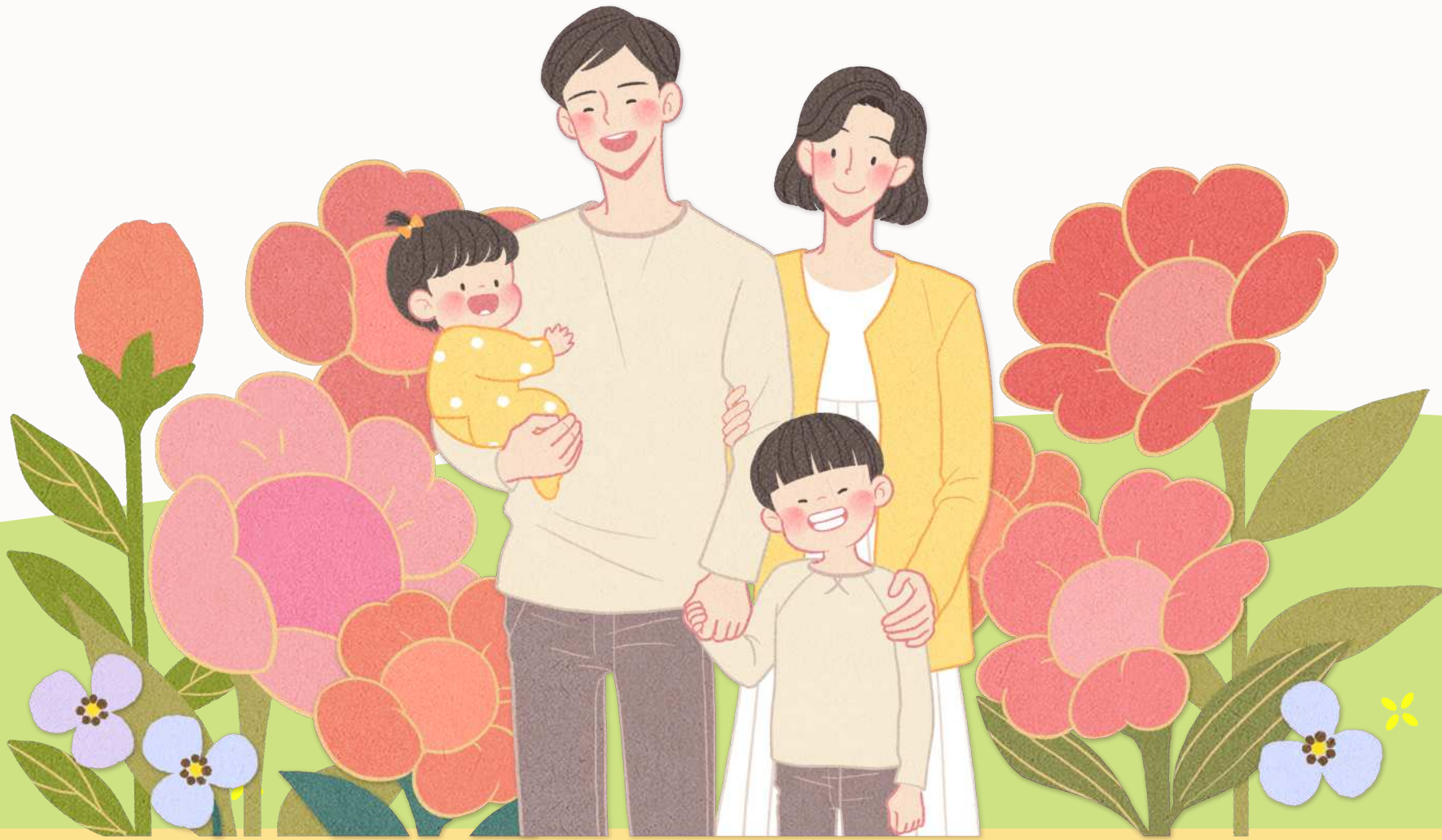




가정위탁제도 20주년

가정위탁 사업 안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3조)

가정위탁 보호유형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학대피해, 영아 등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보호·양육

위탁가정 지원사항

- 양육보조금_월 40만원(경기도 기준)
- 생계·의료·교육 급여_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_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 및 치료_위탁아동 심리검사 치료 지원
- 아동용품 구입비_아동 1인당 100만원 지급(최초 1회)
- 전문아동보호비_아동 1인당 월 100만원(전문위탁가정만 해당)
- 아동자립 지원_자립정착금, 수당, 대학진학자금 등
- 사례관리_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지원 등

위탁부모 선정기준(공통기준)

-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이 가능할 것
- 위탁부모가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 나이차이 60세 미만
- 18세 미만의 자녀 수 3명 이내
- 가정 내 성범죄,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전문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 전문자격 추가 필요

위탁부모 신청절차



문의 및 신청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